

야간금고약관

제1조(금고의 이용)

야간금고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·수표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한다.

제2조(입금)

- ① 거래처는 「야간금고 입금의뢰서」에 예금주명, 예금과목, 계좌번호, 입금금액 및 일자 등을 적어 통장 및 현금, 수표 등과 함께 지정된 입금가방에 넣어 잠그고 야간금고에 넣은 후, 입금가방이 야간금고 속에 완전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
- ② 은행은 영업을 시작할 때 입금가방을 열어 「야간금고 입금의뢰서」에 적힌 금액과 실제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, 확인일자로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.
- ③ 「야간금고 입금의뢰서」에 적힌 금액과 실제금액이 다를 때는 거래처에 알려 확인한 후 입금한다.

제3조(입의조제 금지)

거래처는 은행의 승인없이 투입구 열쇠 또는 카드, 입금가방, 입금가방열쇠를 만들 수 없다.

제4조(분실 신고 등)

거래처는 투입구 열쇠 또는 카드, 입금가방, 입금가방열쇠를 분실 또는 파손한 때는 곧 신고해야 하며 은행이 다시 만들어주거나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래처가 내야 한다.

제5조(면책)

거래처가 입금가방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야간금고에 잘못 넣어 생긴 사고 등 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생긴 사고나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거래처에게 생긴 손해 및 제4조의 분실신고나 절차지연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6조(해약)

- ① 거래처가 야간금고를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은행이 야간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거래처에 알리고 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거래처는 거래약정이 해지됐을 때 투입구 열쇠 또는 카드, 입금가방, 입금가방 열쇠를 곧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.

제7조(대여·양도 등의 금지)

거래처는 야간금고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여, 양도할 수 없다.

제8조(준용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한다.